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레마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2008.9.8., 2015.9.30.>
1. 예명대학원대학교

제4조(주소) ①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가길 49(서초동)에 둔다. <개정 2012.7.29., 2014.10.18., 2020.5.14.>
② 삭제 <2020.5.14.>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7.29.>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9., 2014.10.18.>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9.8.>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8.>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8.9.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사·의결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사·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0.5.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⑤ 삭제 <2020.5.14.>

⑥제4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6.1., 개정 2020.11.26.>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8.>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8.>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9.8.>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6.1.>

④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제12조의3(적립금)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6.1.>

②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 적립금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1.>

③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15.6.1.>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학교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5.6.1.>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8.9.8.>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5.08.22., 2017.07.04., 2020.5.14.>
2. 감사 2인

②상근이사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2.7.29., 2015.6.1.>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08.9.8., 2014.11.23., 2020.5.14.>

1. 이사 3년(중임 가능)
2. 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개정 2023.4.27.>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즉시 임원의 성명·나이·임기·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2022.4.28.>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8.>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8.>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신설 2008.9.8., 개정 2020.11.26.>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로 한다. <신설 2008.9.8., 개정 2014.10.18.>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9.8.>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 2008.9.8.>
제20조의5(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신설 2008.9.8.>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8.>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08.9.8.>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8.>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8.>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8.>
③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8.9.8.>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8.9.8.>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9.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9.8., 개정 2022.4.28.>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2.4.28.>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2.4.28.>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2.4.28.>

⑧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자는 이사 또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6.1.>

제21조의2(임원의 보수 제한) ①법인의 이사 중 상근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5.6.1.>
②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6.1.>
③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5.6.1.>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8.9.8.>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근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5.6.1., 개정 2015.7.12.>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

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8.9.8.>
②이사는 감사 또는 본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 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8.13.>
1. 학교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8.9.8.>
②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8.>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18.>
제29조(이사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4.28.>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8., 개정 2020.11.26.>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8.>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3(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원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8.9.8.>

제31조의4(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08.9.8.>

1. 교원 2인
2. 직원 2인
3. 학생 3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31조의5(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08.9.8.>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6(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본조신설 2008.9.8.>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본조신설 2008.9.8.>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8.9.8.>

제31조의7(평의원의 임기 등)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9.8.>

제31조의8(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8.9.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9(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8.>

제4장 수익 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제5장 해 산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8.>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9.8.>

제35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9.8.>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개정 2020.8.13.>

제36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8., 2020.8.13.>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9.7.25., 2020.8.13., 2022.2.7.>

1. 교수 7년
2. 부교수 5년
3. 조교수 4년
4. 삭제 <2019.7.25.>
5. 삭제 <2019.7.25.>
6. 강사 1년 <본호신설 2019.7.25.>

③제2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5., 2022.2.7.>

④부총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8.13.>
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36조의2(전형결과의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8.>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8.>

제37조(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8.>

1. 교원이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9.8.>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8.>

제37조의2(교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의 장 및 비전임교원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4.>
②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명예퇴직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제2관 신분 보장

제38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2020.5.14., 2020.8.13.>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기관과 재외 국민 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9.8., 2020.5.14.>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0.5.14.>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본호신설 2008.9.8.>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본호신설 2008.9.8.>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본호신설 2008.9.8.>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본호신설 2020.5.14.>

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0.5.14.>

1. 제38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9.8.>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14.>

4. 제38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9.8.>

5. 제38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9.8., 2020.5.14., 2020.11.26.>

7.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9.8.>

8. 제38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08.9.8.>

9. 제38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08.9.8.>

10. 제38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본호신설 2008.9.8.>

11. 제38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본호신설 2020.5.14.>

제40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8.9.8.>

②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9.8., 2020.5.14.>

제41조의2(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임용권자는 제38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26.>

제42조(직위의 해제) ① <삭제 2020.5.14.>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본호신설 2020.5.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2020.5.14., 2020.8.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8.9.8., 2020.5.14.>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

한다. <개정 2008.9.8., 2020.8.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2020.8.13.>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2020.5.14.>
⑧ <삭제 2020.8.13.>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9.8., 2020.8.13.>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8., 2020.8.13.>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8.>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8.>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8.>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9.8.>

② 삭제 <2008.9.8.>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8.9.8.>

②인사위원회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2.6.>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4.>

제54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2020.8.13.>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4.>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본조신설 2020.5.14.>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본조신설 2020.5.14.>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9.8.>

제61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14., 2020.8.13.>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2020.8.13.>

④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2020.8.13.>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교원이 제5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개정 2020.8.13.>
②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제62조(징계의결 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20.5.14.>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6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8.13.>

제6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이 정관과 별도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개정 2022.4.28., 2022.6.28.>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의2(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제67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②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일반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③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일반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일반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제71조의3(일반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1조의2 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②일반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어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③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④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6.28.>

제71조의4(일반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이 같은 법 제70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용권자에게 해당 일반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8.>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2조(법인 사무 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2.7.>

②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원대학교 소속 일반직원 또는 계약직원이 법인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원대학교

제73조(총장 등) ①대학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대학원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0.5.14.>

③대학원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0.5.14.>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4.>

제74조(하부 조직) ①대학원대학교에 기획처, 교학처 및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2.10.1.>

②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교원의 경우 겸보), 교학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사무처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2.7., 2022.10.1.>

제75조 (부속기관) ①대학원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20.5.14.>

② 삭제 <2020.5.14.>

제75조의2(부설연구기관 등) ①법인 또는 대학원대학교에 부설연구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레마성서연구원, 어학교육원 및 예명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4.10.18., 개정 2015.9.30., 2020.5.14., 2020.8.13.>

②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연구·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12.21.>

제75조의3 삭제 <2023.6.30.>

제3절 정 원

제76조(정원) 법인 및 대학원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8., 2020.5.14.>

제8장 보 칙

제77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일간)에 공고한다.

제7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①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②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의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된 교직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제78조의3(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

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4.28.>

제78조의4(행동강령) ①제78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2.4.28., 개정 및 각호신설 2022.6.28.>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

5. 그 밖에 임직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 실시

②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6.28.>

제79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주소
이사장	이명범	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5리버타워1203
이사	윤원영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제일아파트803-403
이사	장순덕	4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산7번지
이사	김매자	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101-1303
이사	권기성	2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동아은하수아파트 104-103
이사	곽정화	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우성아파트 1-402
이사	조장환	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5 한신12차아파트 324-606
감사	정인영	2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386-7 동원아파트 401호
감사	이종문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미도 2차 아파트 503-1203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학교명 변경)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정관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재임 중인 임원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정관 제36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동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및 임원(감사)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재임 중인 임원(감사)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22.2.7.>

계열	직 급	정원
계		5명
일반직	2급 3급 4급	1명
	5급 6급	2명
	7급 8급 9급	2명
계		3명
기술직 또는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명
총계		8명

<별표 2> 대학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22.2.7.>

계열	직 급	정원
계		15명
일반직	2급 3급 4급	2명
	5급 6급	6명
	7급 8급 9급	7명
계		5명
기술직 또는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명
총계		20명